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I

유형별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항

유형	내용
제1호	<p>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그밖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p>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이나 대외비 관련 자료 또는 보안을 요하는 정보 - 그밖에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p>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 우려의 자료 등
제4호	<p>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한 업무 등

유 형	내 용
제5호	<p>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사관리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진행 중인 사항)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등
제6호	<p>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민사소송 판결문(원고, 피고의 인적사항) -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7호	<p>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 법인 및 단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그밖에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p>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산업단지조성계획 및 사업조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II

단위별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처	팀			
안전 감사	-	감사, 재난안전, 고객만족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경영 기획	기획 인사	기획, 인사, 조직, 평가, 전산	인사관리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	제5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 우려의 자료 등	제3호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6호
	법무	사규, 총무,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민원관리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한 업무 등	제4호
			행정, 민사소송 판결문(원고, 피고의 인적사항)	제6호
			비밀이나 대외비 관련 자료 또는 보안을 요하는 정보	제2호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6호
재무 회계	재무	자금운용, 결산, 세무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6호
	계약	계약, 물품관리, 구매, 자금조달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진행 중인 사항)	제5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처	팀			
사업 기획	브레인 사업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및 인·허가	각종 산업단지조성계획 및 사업조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8호
	신규 사업	신규사업타당성 검토, 대행사업 위·수탁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진행 중인 사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건설 사업	공사1	황해 평택BIX 조성사업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제7호
	공사2	진위2산단, 택지개발, 신기술·신공법	법인 및 단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제7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제7호
분양 보상	분양	산업단지 분양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한 업무 등	제5호 제4호
	보상1	산업단지 보상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5호
	보상2	산업단지 보상	각종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제5호
교통 사업	주차 사업	공영주차장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 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6호
	교통 약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어린이 교통공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 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감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6호